

■ 규정명 : 내부거래위원회규정

■ 규정번호 : HC-조직-4

■ 주관부서 : 지원팀

■ 제정일 : 2006.12.18

■ 최종개정일 : 2013.03.23

■ 개정번호 : 2

■ 목차

1. 총 칙

2. 구 성

3. 회 의

부 칙

1. 총 칙

1.1 목 적

이 규정은 내부거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함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1.2 적용범위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1.3 권 한

위원회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조의8 제2항의 내부거래를 심사 및 승인한다.

2. 구 성

2.1 구 성

- 2.1.1 위원회 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.
- 2.1.2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하며, 사외이사는 위원총수 2/3이상으로 한다.
- 2.1.3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중임할 수 있다.
- 2.1.4 위원이 사임·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2.1.2의 위원 수에 미달하게 된 때 잔여 사외이사가 있을 경우 이사회에서 선임하고, 잔여 사외이사가 없을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를 통해 그 구성요건을 충족한다. 단, 결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지체없이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하여야 한다.

2.2 위원장

- 2.2.1 위원회는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과반수의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선정한다.
- 2.2.2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,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.
- 2.2.3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3. 회 의

3.1 종 류

- 3.1.1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.
- 3.1.2 정기위원회는 매월 둘째 수요일에 개최한다.
- 3.1.2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3.2 소집권자

- 3.2.1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2.2.3과 같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- 3.2.2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
위원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3.3 소집절차

- 3.3.1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3일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 문서, 모사전송기(FAX),유선 등의 방법으로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.
3.3.2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3.3.1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3.4 의안제출

- 3.4.1 위원회 상정 의안과 그 제안 이유는 각 해당부서에서 작성하여 1주일전 까지 위원회 간사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.
3.4.2 간사는 전항 접수 의안의 문안 검토를 거쳐 이를 위원회에 부의한다.

3.5 결의방법

- 3.5.1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한다.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[개정 2012.3.23]
3.5.2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
3.6 부의 사항

- 3.6.1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
(1)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조의8 제2항에 따른 단일 혹은 연간 총 거래규모가 50억원 이상이거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내부거래
(2) 기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조의8 제2항의 내부거래 관련 필요사항

3.7 관계인의 의견청취 등

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·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,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3.8 의사록

3.8.1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
3.8.2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3.9 보 고

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3.10 간 사

3.10.1 위원회에는 간사를 둔다.

3.10.2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.

3.11 규정의 개폐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2006년 12월 18일부터 제정 시행한다.
2. 이 규정은 2009년 7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
3. 이 규정은 2012년 3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 다만 3.5.1에 정한 개정 내용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